

제 회 정 수 시 설 운 영 관 리 사 자 격 시 험 응 시 원 서 (원 본)

「수도법 시행령」 제42조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. 이 원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「수도법」 제24제2항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1 년 월 일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※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.

① 수험번호 ※				환경부장관 귀하											
② 등 급		[] 1등급			[] 2등급			[] 3등급			응시 시험		※ [] 1차 객관식 [] 2차 실기		
③ 성 명		(한글)			(한자)			④ 주민등록번호 -							
⑤ 주 소 (주민등록지)									⑥ 전화번호		일반전화: () 휴대전화 :				
⑦ 최종학력		[] 대학원 [] 4년제 대학 [] 2년제 대학 [] 고등학교 [] 기타					전공		[] 재학 [] 졸업 [] 수료		⑧ 실무 경력		담당업무 (년)		
⑨ 국가기술 자격 취득		종 목					자격증번호					합격 일자			
⑩ 면 제 신 청(해당자만 기입)															
⑪ 시험면제		[] 상하수도기술사 [] 수질관리기술사 [] 수질환경기사 [] 수질환경산업기사					[] 필기 시험합격		제 () 회 () 등급		원서기재내용 접수담당확인				
⑫ 면제 과목		※				※				※				※	
⑬ 근무처															
인															

○ 편 철 부 본 ○	제 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(부분)							사 진 (3.5cm×4.5cm)
	⑭ 응시번호 ※		⑮ 등 급		[]1등급 []2등급 []3등급			
	⑯ 성 명		⑰ 주민등록번호		-			
	⑱ 면제과목 ※		※		※		※	
	⑲ 연락가능 주소 ※							
	⑳ 연락가능 전화번호		일반전화: ()		E-mail			
	호		휴대전화:					

제 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표				사 진 (3.5cm×4.5cm)
㉑ 응시번호	※	㉒ 등 급	[]1등급 []2등급 []3등급	
㉓ 성 명		㉔ 주민등록번호	-	
㉕ 주소				
㉖ 전화번호	일반전화: () 휴대전화:			
시험일시 및 장소			년 월 일 환경 부 장 관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응시원서 기재요령

● 이 원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입니다.

- 모든 내용은 정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,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- 제출일자: 응시원서 원본과 응시표에 제출일자를 적어야 합니다.
- 성명 ③, ⑩, ⑭: 한글로 기재하되 원본의 한자란에는 한자를 적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번호 ④, ⑰, ⑳: 주민등록번호는 칸에 맞추어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.
- 주소: ⑤는 주민등록지 ⑱, ㉕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.
- 최종학력 ⑦: 해당란에 ☒표를 하고 전공란에 전공 분야를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실무경력 ⑧: 해당 분야 실무경력에 대하여 근무 중 담당 업무와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
- 면제신청 ⑩: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42조제5항 및 제43조에 따른 시험면제(과목면제 포함합니다) 해당자로서 면제를 원하는 자만 신청하여야 합니다.

가. 시험면제 ⑪:

-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: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
 - 상하수도기술사: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
 - 수질관리기술사: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· 제2호 및 제4호
 - 수질환경기사: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
 - 수질환경산업기사: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
- 면제과목 ⑫, ⑮: 취득한 자격종목의 응시 당시 시험과목과 응시하려는 현행 시험과목이 중복되는 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 - 근무처 ⑬: 근무 중인 사업장명 및 소재지를 적어야 합니다.
 - 사진: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.5cm×4.5cm 규격의 동일 원판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합니다.

응시자 유의사항

- 수험원서를 잘못 적어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니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.
- 접수된 수험원서·수수료,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.
- 수험자는 수험(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) 시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까지 본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.
-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혀 있는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,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.
-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)수험표 2)신분증 3)검은색 사인펜 4)검은색 볼펜 5)계산기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,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, 필답형 실기시험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(연필 제외)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수험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, 입력용량이 큰 전자계산기는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수험자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「수도법」 제25조 및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1조에 따라 해당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필기시험일(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) 현재 수험자의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됩니다.
-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실비금액은 접수장소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게시·공고되오니 납부기간 내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(합격 여부는 개별통보하지 아니합니다).

필기시험 합격 발표일	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실기시험 실비납부 기간

10. 그 밖의 안내사항

가. 자격증 발급

- 준비물: 신분증, 증명사진 1장, 발급수수료
- 발급 장소: 시행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

나. 응시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